

공고

신년

기안용지

분류기호 1438.5 (전화번호 367) 전결규정 조 2호 부시장 전

처리기한 기안자 결 객 주  
시행일자 68. 1. 19 보선과 제 2 부시장 1968. 1. 16  
보존년한 1968 기안일자 결 객 주

보 보사국장  
조 보선과장  
기 보선계장  
관

별 조 라간 회계처장 등 부시장  
유신조 각안참조  
제 목 신사리 묘지내 안분로 이장공고

안)내 부결재

1 도시방전이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위 하여 신사리 묘지를 이장키로 하고 다음 각안을 응고 시행코려 합니다

- 가 공고를 지출안 (안 2와 같음)
- 나 공고안 (안 3과 같음)
- 다 각구 지시안 (안 4와 같음)
- 라 공보실 통보안 (안 5와 같음)

1-1, 1-14 74서윤부민서 95

1-2

~~파. 개별 통지 (양 6와 같음)~~

(제 2 단) 공고료 지출

1. 공고료: ~~총합 8,400원~~

2. 내역

품명	적요	수량	단가	금액	부기
중앙보안지(3판)	3회	2판 60명	50	54,000	2판 60명, 150명, 3판
" (4판)	.	.	150	54,000	2판 60명, 150명, 3판
계				108,000	

3. 지출방법: 청구에 의하여 직불금

4. 지출과목: 보전비, 보전관리비, 모지관리비, 수수료및수비

(제 3 단) 공고안 공고제 17호 (40부)

서울특별시 공고제 호 (차) ~~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~~ 도시계획사업  
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기시 사용중이던 당시  
 신사리 모지내 일부 분묘를 개장할것을 매장능 및  
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6조 및 동시행규칙  
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.

1. 이장 대상

대상분묘	45,000기종, 1,000기	
대상묘역	100,000평종 10,000평	관동산 3 신사동산, 아.지.기.지.2부

2. 개장 신고 및 개장기간 (4개월)

1968. 1. 1. - 5. 31. 까지

3. 개장 요령



서대문구 녹신제2동 ~~사무소~~이 신고  
하고 개장 신고증을 발급 받았습니다

나. 개장시 지정 시립묘지 또는 장제장을  
사용시는 사용료를 면제 받습니다  
묘지는 2등지 3경이며 화장시간은  
13:00 ~ 17:00)

다. 이장 묘지는 시립 응미리 및 벽제리 묘지  
를 지정 받습니다

5. 일부이장과 같이  
4500보 전 부이장  
묘지명장 제를  
추후 1차 정밀  
조사하여

이상과 같이 개장기간내에 이장치 아니할  
수는 무연분으로 간주하여 양지에서 이장  
일부는 합동분묘를 설치 받는다.)

기타 상이한 것은 신사리 묘지 사무소에 문의  
하시라 ~~이장대상 지역이 경계표지를 하  
고나 원과 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~~

1968.  
서울특별시 ~~시정~~ ~~시정~~ ~~시정~~

(제 4 단) 각구지시안

수신: 수신처 참조 발신: 시장

제목: 신사리 묘지 분묘 이장

별첨과 같이 방침에 의하여 신사리 묘지를 이  
제 되었으니 본 사항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서대문  
구에서는 녹신 2동이 지시하여 개장기간중 신고증 발급에  
차질이 없도록 할 것

1-4

첨부 공고문 사본 1부  
수신처: 서청1~9

(제 5 안) 공보실 통보안

수신: 공보실장

발신: 보사국장

제목: 등 건

당시의 도시계획 사업을 위하여 신사리 묘지를  
이전케 되었으나 본 묘지를 전시민에게 주지 시켜주시고  
시보에도 게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

첨부 공고문 사본 1부 끝

(제 6 안) 거별 통지안

~~再  
보  
통  
지  
안~~  
조국의 근대화를 위하여 각기 다른 분야에서  
정성으로 노력하시는 위하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 
드립니다

~~금번 당시에서는 창조 계획하는 데는 맞아  
도시계획 사업을 위하여 도읍에서 행정 기관을  
리리야있는 신사리 묘지를 이전케 하였습니다~~

~~오래동안 이곳이 묘지를 모셔오 제신 위하에서  
이들 이장함에 있어 많은 불만과 비로움이 있을  
것으로 사료되오나 발전하는 수도사들을 이룩  
하는데 합조라는 뜻에서 정구 호응하여주시기  
바라옵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~~

다 음

~~68년중 이전대상: 증산동산3. 선사동산105. 산96. 79. p3 일부~~

~~69년중 이전대상: 선사동<sup>년</sup>산 p3 일부~~

~~70년중 이전대상: 선사동 산48~~



“新法条文拔萃”

埋葬等及墓地等関係法律

第16条 (墓地、火葬場等) 細骨等の移転に許可取消) 市長特別市長等 道知事之國民保健上 危害を及ぼす虞がある都市計画上 特別必要하다고認定するときは、墓地、火葬場等に 細骨等の移転を命ずるが、工務部改葬等に 工全部の一部に使用禁止を命ずるが、工許可を取消するは、

第17条 (改葬命令等) ① 市長特別市長等 道知事之墓地以外に 土地等に 設置者承諾 或は他人に墓地の埋葬を 承諾する遺骨に 對しては 一定の期間公告を命ずる 工埋葬者 其他 縁故者 等) 改葬を命ずるは、

② 前項の 境遇に 埋葬者 其他 縁故者 以外に 不明なときは 土地の所有者等に 工管理人之市長特別市長等 道知事の 許可を 受け 一定の期間 公告を命ずる 工改葬する 是、

③ 前二項の 公告期間に 改葬の 困難な 必要事項を 保健社会部令 により 定むる

埋葬等法(墓地等)國土法施行規則

第十四條 (公告期間等) 本法第十六條第一項及第二項의 規定에 依한 公告는 至少 二種 以上의 日刊新聞의 各々 三回 以上 刊載 公告期間은 最初의 公告日 부터 六月 止 刊載 二回 以上 公告는 最初의 公告日 로부터 二月 後 五日 以後에 三回 以上 公告는 公告期間 滿了 二日前에 하여야 한다

田 公共施設의 設置에 關한 地方自治團體가 行하는 國土建設事業의 軍事目的의 (15號) 依한 緊急의 使用을 爲한 土地의 埋葬원 屍體生肉遺骨에 對하여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公告期間은 最初의 公告日 부터 二月 止 刊載 二回 以上 公告는 最初의 公告日 부터 二十日 後 五日 以後에 三回 以上 公告는 公告 滿了 二十日前에 할 수 있다